



페이지	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(2024. 05. 17. 시행)
	수정전
1권 p.192	29. 문화재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건축물
오려 붙여주세요.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정 후</p> <p>29. 국가유산</p> <p>가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</p>

	수정전
1권 p.195	<p>⑨ 문화재 ⑩ 지하구 ⑪ 아파트등 ⑫ 오피스텔</p>
수정 해주세요.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정 후</p> <p>⑨ 국가유산 ⑩ 지하구 ⑪ 아파트등 ⑫ 오피스텔</p>



1권 p.200 오려 붙여주세요.	수정전
	<p>바.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)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1) ~~~</p> <p>2) ~~~</p> <p>~~~</p> <p>~~~</p> <p>8) 문화재 중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로서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</p>
	수정 후
	<p>8) 국가유산 중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정문화유산(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)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천연기념물등(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)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</p>

1권 p.200 오려 붙여주세요.	수정전
	<p>사.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등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,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)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</p> <p>1) ~~~</p> <p>2) 문화재 중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</p> <p>3) ~~~</p>
	수정 후
	<p>2) 문화유산 중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</p>



1권 p.203 오려 붙여주세요.	수정전	
	사.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별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 1) 1) ~~~ 2) ~~~ 3) ~~~ 4) 문화재 중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) ~~~	
	수정 후	
	4) 문화유산 중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	

1권 p.209 수정 해주세요.	수정전	
	6. 옥외소화전설비	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재인 목조건축물에 ⑯ 를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 · 방수량 · 옥외 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.
수정 후		
6. 옥외소화전설비	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유산인 목조건축물에 ⑯ 를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 · 방수량 · 옥외 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.	